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동이사 선임의 법적 근거 마련〉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79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노동이사 선임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항 등)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다. 회부연월일 : 2025.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등).

Ⅲ. 검토의견

1. 노동이사 선임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항 등)

가. 개정안 요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최소한 1명의 이사는 3년 이상 재직 중인 지능정보사회원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함(안 제12조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② (생략) <u><신설></u>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지능정보사회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최소한 1명의 이사는 3년 이상 재직 중인 지능정보사회원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u>

현행	개정안
③ ~ ⑧ (생략)	<u>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u> 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70조(과태료) ① (생략)	④ ~ ⑨ (현행 제3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②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② 제12조제8항을-----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¹⁾에서는 지능정보사회 관련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능정보사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계획, 실행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지능정보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의 지원 및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과 관련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의 지원
4. 국가기관등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 및 지능정보화의 지원
5.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전문기술의 지원 등 데이터의 생산·관리·유통·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근거를 두고, 그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에 추가하여 지능정보사회원의 임원 구성 시 최소한 1명의 이사는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동이사 선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 현재 지능정보사회원은 위탁운영형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2024년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 중임.

-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²⁾는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절차와 기

-
7. 지능정보사회원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8.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9.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10.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11.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사회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한 사업
 12.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⑤ 지능정보사회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지능정보사회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지능정보사회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

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항에 노동이사 선임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임.

○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노동이사 선임 관련 사항을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근거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도 규정하려는 취지임.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위탁운영형 준정부기관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개별법에 설립의 근거를 두면서도 노동이사 선임 관련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³⁾.

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경우에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명한다.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해당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⑤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보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기업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본다.

⑦ 제3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참고자료 참조

-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립의 근거, 사업 추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지만, 노동이사 선임 관련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은 제6조에 임원은 공공기관운영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하도록 규정하였지만 별도의 노동이사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음.
- 따라서, 지능정보사회원이 위탁운영형 준정부기관으로써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타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 선임 관련 입법례가 부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운영(2024년 2월부터) 중이며, 향후 지정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될 경우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참고자료

「전파법」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2. 방송·통신·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 및 분석
3. 방송·통신·전파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⑤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정보보호산업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등 정보보호 인증·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9.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원인분석·대응체계 운영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통한 예방·대응·협력 활동
 12.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20.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21. 본인확인업무 및 연계정보 생성·처리 관련 정책의 지원
 22.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④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에 인터넷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 ⑤ 인터넷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인터넷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⑦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연구재단법」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③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230